



제 1189호

2014년 8월 22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칙 제86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2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공 고

- 공고 제2014- 135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10
현장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 공고 제2014- 1354호 카드 매출채권 압류 예고통지 공시송달(공고) 17
- 공고 제2014- 136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19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 남동구보건소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4
공고 제2014- 45호 예정 공고
- 남동구보건소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5
공고 제2014- 46호 예정 공고
- 남동구보건소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6
공고 제2014- 47호 예정 공고
- 남동구의회사무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27
공고 제2014- 10호 입법예고

고 시

- 고시 제2014- 103호 도로명주소 고시 34

회 람								
----------------	--	--	--	--	--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8월 22일

남동구 규칙 제86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야 하며, 도시환경 미화를 위하여 지정된 요일 19:00부터 24:00사이에 배출하여야 하고, 수거업체의 휴무일에는 배출할 수 없다.

2. 재활용가능자원은 생활폐기물과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요일 19:00부터 24:00사이에 재활용가능자원임을 알 수 있도록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고, 수거업체의 휴무일에는 배출할 수 없다.

3.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은 토지건물의 입구, 대문 앞, 주 출입구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주택 단지 내 보관용기 및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용기가 설치된 지역(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등)은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

제3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나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휴지통

2. 생활쓰레기 보관시설이나 용기 (재활용가능자원, 음식물류폐기물)

3.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시설용기 및 부대시설

②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8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8호이상 오피스텔)의 공동주택 관리·운영자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당해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운영자는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설치된 생활폐기물 배출시설이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 적환장) ① 구청장은 조례 제2조제6호의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 발생성상,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설치된 적환장이 생활환경,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③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적환장의 청소도구는 일정장소에 지정 보관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소지정) 구청장은 조례 제18조 제1항에 의한 지정 신청을 받을 때에는 주민의 편리와 주위 여건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쓰레기봉투 공급 대금 납입) 구청장은 판매소에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공급하고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공급전에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제작업자, 판매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환불) ①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봉투 및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불에 관하여 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폐기물무단투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10%를 지급한다.

2. 신고포상금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것만 지급하며, 적발일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만 지급한다.

3. 무단투기 신고자 1인에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은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제3호에 의한 신고포상금중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연도 예산 부족 시 다음 해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는 과태료 부과 후 납부기한이 종료한 날부터 7일이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상 호		지 정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17조 및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쓰레기봉투는 항상 충분한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요구 시 낱장으로도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2. 파손된 불량봉투를 소비자가 교환을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진열장 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봉투를 용량별로 구분하여 진열하여야 합니다.
4. 쓰레기봉투 가격표시판을 영업소 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5. 다른 시·군·구로 이사할 경우 등 남은 봉투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하면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합니다.
6. 종량제봉투 판매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부시 여신금융법 제19조1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봉투 판매가격을 위반할 시에는 봉투판매소 지정을 취소합니다.
(봉투 겉면 가격표시 판매 준수)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쓰레기봉투의 구입은 반드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봉투공급소에서 구입하셔야 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판매소 지정을 취소합니다.

☞ 쓰레기봉투 불법유통 발견시 청소과 (☎453-255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2호 서식]

쓰레기봉투공급신청서

(판매소용)

- 판매소명 :
 ○ 성 명 :
 ○ 소 재 지 :
 ○ 지정번호 :

우리 판매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 봉투공급 신청내역

구 분		공급수량	공급금액	1매 가격
계			원	
일반용 봉 투	5ℓ 봉투	매	원	원
	10ℓ 봉투	매	원	원
	20ℓ 봉투	매	원	원
	50ℓ 봉투	매	원	원
	100ℓ 봉투	매	원	원
사업계 용봉투	30ℓ	매	원	원
	60ℓ	매	원	원
	125ℓ	매	원	원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인천광역시 O C R					(납부자보관용)					인천광역시 O C R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세외수입										세외수입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번호														
납부자 :										주민등록번호 :										납부 번호																			
주 소 :										부과대상 :										납부자 :																			
부과대상 :										납기내금액										까지																			
납부 기 한										까지										까지																			
과 목										납 기 내 금 액										납 기 후 금 액																			
합 계 금 액																				합 계 금 액																			
총 체 납 금 액																				납기후금액										까지									
																				합 계 금 액																			
담당자 : 전 화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영수증은 관내 금융기관 및 관내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및 전국농협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수납인																													
인천광역시 O C R										(구정보관용)										세외수입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번호														
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 : 주민등록번호 :										부과부서 : 문서번호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납부 기 한										까지										까지																			
과 목										납 기 내 금 액										납 기 후 금 액																			
합 계 금 액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쓰레기 배출방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배출방법 위반 시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에 따른 다툼을 방지 하고,
- 신규 공동주택 관리자 및 건축자에게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쓰레기 배출방법 조정 (시행규칙 제2조)
 - 성상별 지정된 요일 19:00~24:00사이에 대문 앞, 주 출입구 앞 배출
 - 단,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수시 배출 (공동관리소)
- 쓰레기 보관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규칙 제3조)
 - 8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8호 이상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설 사업자 및 관리운영자의 단지내에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설치 의무화
- 생활폐기물 적환장 (시행규칙 제3조)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및 환불 등 (시행규칙 5~8조)
-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규칙 제 9조)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별지1호서식)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35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제 신고 고객 보호 · 서비스 현장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제 신고 고객 보호 · 서비스 현장 운영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제 신고 고객 보호 · 서비스 현장 운영 규정(안)

2. 제정취지

규제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이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규제업무처리의 공정성 확보로 구민과 기업, 구청 간의 신뢰의 민원행정 제공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규제 신고 고객에 대한 보호 기본 원칙 (안 제6조)

1.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미 이행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현장 실천 노력, 소속 직원에 대한 연1회 이상 교육실시 (안 제8조)

- 규제 신고 고객의 불만족 및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안 제10조)
- 헌장이행 우수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안 제12조)
-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별지)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9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901, FAX 453-205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공청회 계획 없음.

6.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안) : 별첨

남동구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구민·기업 간의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규제 신고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 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 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란 현장 이행 기준에 따라 구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이하 “각 부서”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법인·단체에게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현장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합리적인 현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미 이행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현장의 내용) ① 현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현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제6조(현장의 구성) 현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전문
2. 규제 신고 고객에 대한 불이익금지, 차별금지
3.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4. 규제 신고 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 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 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현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현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현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현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규제 신고 고객 의견을 반영한 현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확정
3. 현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현장의 실천) ① 모든 공무원은 현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현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현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현장을 제정 및 개정할 때에는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구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구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 신고 고객이 현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 고객이 보기 쉬운 사무실 입구에 현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현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 고객의 불만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규제 신고 고객은 구청장 및 「중소기업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접수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규제업무 부서의 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반기별로 그 내용을 전 부서에 알려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현장의 이행 기준 달성 및 규제 신고 고객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현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현장(제5조제1항 관련)**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현장**

우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 공무원은 규제 신고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주민,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구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1. 고객께서는 규제개선, 애로해소에 대한 의견제출 및 규제 신고 만족도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제신고 의견 제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획예산실 규제개혁추진단 ☎032)453-2901,2902 (405-7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88 기획예산실 규제개혁추진단)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3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체납에 따른 카드 매출채권 압류 예고 통지 및 체납액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4년 8월 18일 ~ 2014년 9월 5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등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카드 매출채권 압류 예고 통지		
2. 당사자	성 명	별지참조	주민등록번호	별지참조
	주 소	별지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체납		
4. 압류예고대상		별지참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체납에 따른 카드 매출채권 압류 예고 통지 및 체납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공고)		
6. 법적근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		
7.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2483)		

체납자 카드 매출채권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연 번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압류 예고 대상	비 고
1	황세미	6302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213번길 **	브랜드**	
2	김종옥	611125-*****	인천시 남동구 구월남로289번길 **-**	금강**	
3	조경상	540727-*****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옥파로 ***	평화식염***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36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에서는 적법 절차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인천광역시에 융자금을 신청함에 따라 융자사업 절차를 현실에 맞게 신설

3. 주요 개정내용

-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융자사업 절차 조항 신설(안 제12조의2)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침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식품위생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622, FAX 453-27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4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 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에서는 적법 절차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 한 후 인천광역시에 융자금을 신청함에 따라 융자사업 절차를 현실에 맞게 신설

☐ 주요내용

-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융자사업 절차 조항 신설(안 제12조의2)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침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융자사업 절차) 구청장은 제5조제1호의 융자사업을 함에 있어, 기금의 융자 신청이 접수되었을 때는 적법 절차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 후 인천광역시에 융자금을 신청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u>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u>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u> <u>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u>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u>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u>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u>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u> <u>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u>
<u><신 설></u>	<u>제12조의2(융자사업 절차) 구청장은 제</u> <u>5조제1호의 융자사업을 함에 있어,</u> <u>기금의 융자 신청이 접수되었을 때는</u> <u>적법 절차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한</u> <u>후 인천광역시에 융자금을 신청한다.</u>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4 - 45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4. 9. 01.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4. 8. 19 ~ 2014. 8. 31(13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제41호	(주)동원홈푸드 인천지점	신*수	하촌서로 15, 202호 (만수동)	사업자등록폐업	2014.02.28.	2014.09.01.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4. 8. 31.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032)453-2754

2014년 8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4 - 46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 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4. 9. 01.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4. 8. 20 ~ 2014. 8. 29 (10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음식점	간석2-113	좋은사람들	양*화	평온로6번길 5 (간석동)	사업자등록폐업	2013.12.11	2014.09.01.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4. 8. 29.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6

2014년 8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4 - 47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 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4. 9. 02.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4. 8. 22 ~ 2014. 9. 01. (11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음식점	남도-247	국회	LIN*RONG	남촌로100번길 15 (남촌동)	사업자등록폐업	2012.03.17.	2014.09.02.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4. 8. 29.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6

2014년 8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 제2014 - 1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 안정적인 새마을운동 추진 근거로 삼고자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경비 지원
-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경비 지원
-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 경비 지원
-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지원
-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
-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공제 가입
-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한 포상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일 (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032-453-5012, 5030 / 팩스 032-453-50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577
----------	------

발의연월일 : 2014년 8월 20일

발 의 자 : 박인동

찬 성 자 : 이선옥,전유형,임춘원,민창기
임순애,문종관,이오상,최재현

☐ 제안이유

-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 안정적인 새마을운동 추진 근거로 삼고자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경비 지원
-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경비 지원
-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 경비 지원
-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지원
-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
-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공제 가입
-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한 포상

☐ 본 문: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생략”

☐ 참고자료

-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인천남동구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각 동조직 및 협의회, 부녀회, 문고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3.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운동조직 또는 새마을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 기존 사업비 지원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사회단체보조금)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기존 인천 남동구 새마을회 지원(새마을운동자녀장학금 및 사회단체보조금)
으로 5천만원이상 예상되는 신규 사업이 없음

작성자 : 남동구의회 의원 박인동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4 - 10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15외 7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266번길 16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8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9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08. 2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266번길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64-7	2014.08.2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266번길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64-8	2014.08.2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8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22-18	2014.08.2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33번길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9-89	2014.08.2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33번길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9-90	2014.08.2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29번길	30-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9-93	2014.08.2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29번길	26-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9-94	2014.08.2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1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1-149	2014.08.2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1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49-4	2014.08.2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18-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15	20090706	간석동을 지나는 도로로 돌산이 있었다는 유래에서 반영	2014.08.20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산로 115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15를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2-12외 1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46-10	20090706	구월동을 관통하는 구월로의 남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8.20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남로 146-10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46-10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3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골로	36	20091116	능골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14.08.20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능골로 36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6을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8-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53번길	6	20091116	구월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4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8.20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남로53번길 6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을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8-2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53번길	2	20091116	구월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4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8.20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남로53번길 2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를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64-1외 1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874	20090706	백제,고구려,신라시대에 사용되었던 인천의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14.08.20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매소홀로 874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874를 건물번호로 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80-4외 1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 12번길	12	20091116	구월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4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8.20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남로53번길 2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를 건물번호로 부여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49-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135	20091116	옛날에 장군이 숨어있었다는 산의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14.08.20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아산로 135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35를 건물번호로 부여	